

『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현대 산업도시는 ‘지속가능한 발전’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거듭되면서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한 예로 도시를 중심으로 여성의 도시권에 대한 성찰이 국제사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.
- 따라서,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,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친화적,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 - 구미시를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조성
-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(안 제5조 ~ 제7조)
 -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
 -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모든 업무는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
 -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
-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(안 제8조 ~ 제18조)
 -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
 -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실시
 - 도시기반시설, 공공이용시설, 주거단지 개선

- 여성안전 및 능력개발, 취업·창업 활성화
- 가족친화마을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, 지역특성화사업 실시
-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및 위원회(안 제19조 ~ 제31조)
 -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모니터단 및 위원회 구성
 - 모니터단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역할

4. 참고사항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,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친화적, 지역 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함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목적(안 제1조)
-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(안 제5조 ~ 제7조)
-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(안 제8조 ~ 제18조)
-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및 위원회(안 제19조 ~ 제31조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

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,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친화적,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